

#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6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9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「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」 일부조항에 대해 상위법령인 「자연재해대책법」과 일치하지 않거나 규정을 둘 실익이 없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합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(안 제6조제2항)

-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, 회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협의회 회원 수를 20명 내외로 규정

나. 교육(안 제13조제4항)

- 방재활동 등 참여 시 민방위 교육면제에 대한 규정이나,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 따라 삭제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7.08.11. ~ 2017.08.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의견 반영

##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협의회는 단장,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, 읍·면 대표, 방재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2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제13조제4항을 삭제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지역자율방재협의회) ① (생 략)</p> <p>②<u>협의회는 단장,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, 읍·면 대표,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~ ⑥ (생 략)</p> <p>제13조(교육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<u>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.</u></p>	<p>제6조(지역자율방재협의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u>협의회는 단장,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, 읍·면 대표,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2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교육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민방위기본법

제23조(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) ① ~ ② 생략

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., 2017.7.26.>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
2.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
3.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·응급 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
4. 의료·전기·통신,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. 다만,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 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.
5.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

④ ~ ⑥ 생략

# 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## 2. 미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## 3. 미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요인 없음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
연락처	(033) 330 - 2406